

대학(원)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

★ 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법령 의무교육 입니다!! ★

1. 근거 법령

- 가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1
- 나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3

2. 교육대상: 전 재학생

3. 교육유형: 성폭력(성희롱, 성매매) 및 가정폭력 (2시간)

4. 교육이수 : 매년 1회 이수(각 유형별 1시간)

5. 교육방법: <http://hrcedu.knu.ac.kr/> 에 접속하여 수강

- 모바일 학생증(KNUPIA)으로 접속하여 모바일 수강 가능!!
- 폭력예방교육 <교육과정 <온라인 폭력예방교육(학생용) 수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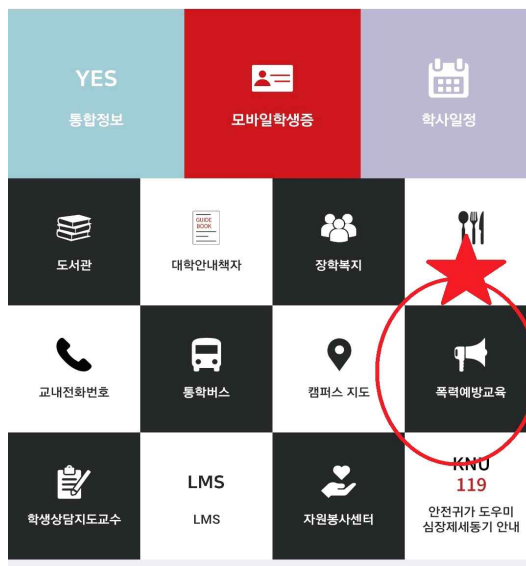
※ 영어 및 한국어 버전 2가지 중 택일

[모바일 학생증 통한 접속]



대학공지

대학생활



문의 : 인권센터 950-6191